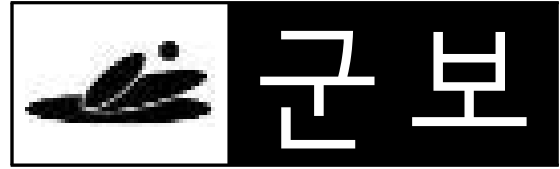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38호 2019. 5. 24.(금)

조 례

- 예산군 조례 제2516호 :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1
- 예산군 조례 제2517호 :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 9
- 예산군 조례 제2518호 :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 예산군 조례 제2519호 :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예산군 조례 제2520호 :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예산군 조례 제2521호 :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예산군 조례 제2522호 :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60
- 예산군 조례 제2523호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 예산군 조례 제2524호 :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3
- 예산군 조례 제2525호 :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 예산군 조례 제2526호 :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91
- 예산군 조례 제2527호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규 칙

- 예산군 규칙 제1463호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9
- 예산군 규칙 제1464호 :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5
- 예산군 규칙 제1465호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127

회									
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1)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16호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시 청년여성정책위원회분과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지원 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어업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확대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농어업·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대책 강구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추진 행사(워크숍 등) 개최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2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 예산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수립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청년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 촉진으로 인구 증가 도모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정책연구(안 제5조 ~ 제6조)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구성·회의 운영 등(안 제7조 ~ 제11조)
-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안 제12조)
- 청년정책사업의 경비의 지원(안 제13조)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14조)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17호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8.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9.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 제2조)

-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및 주민 합의 도출 등

나.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3조)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수렴,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등

다. 협의회 회의 및 행사에 필요 시 공공시설 이용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 포상규정(안 제6조)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18호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줄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영리법인"은 양성평등의 촉진, 지역사회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는 양성평등의 촉진, 지역사회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②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성평등 정책 기본방향
-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 마.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 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사.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군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5. 여성친화도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

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예산군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운영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시책

제16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직장 가족친화제도 운영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일·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2. 방과 후 아동보육과 돌봄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워크숍 및 연수
2. 사랑의 김장담그기
3. 가족사랑 걷기대회
4. 양성평등관련 사업

제26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불균형을 불러 일으키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부,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북한이탈군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양성평등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주간 행사) 군수는 군민의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및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촉진 등 범군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1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군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군민 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군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공무원, 기업인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

제35조(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평가의 시기, 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구성 및 운영) 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예산군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성인지 통계) ①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

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군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예산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사전협의) 각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성별영향평가법” 으로 개정
 - 국민과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각종 중장기 계획 및 사업을 성별영향 평가 실시하고 있으나 분석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제외되는 경우 발생.

2. 주요내용

- 양성평등관련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 양성평등, 성차별, 성별영향평가 용어 추가
- 실질적인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안 19조~ 안 22조, 안 제31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일·가정양립, 평등한 가족생활, 모·부성권 권리 보장,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단체 등과 협력 지원
- 양성평등을 위한 군의 책무 강화
 - 양성평등 관련 정책 추진시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계획수립 추진(안 제5조)
 - 위촉직 여성비율 40% 이하일 경우 양성평등 위원회 보고(안 제17조)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관련 사업 추진시 여성정책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안 제42조)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19호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 등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유니버설 디자인 등 도시공간정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0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민참여단은 5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
2.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주민

제5장에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 제시, 참여
4. 그 밖에 성 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2조(활동 지원) 군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군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등 기관, 단체, 개인 등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임기 등) ①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민 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진출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군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30조 앞에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운영”을 삽입한다.

제6장(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홍보) 군수는 여성친화도시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적합한 학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35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군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자문, 심의를 의결한다.</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제22조(기능) ① ----- ----- 심의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u></p>
<p>제23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u>군의 기획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경제과장, 총무과장, 건설 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p>1. <u>예산군의회 의원</u></p> <p>2. <u>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3. <u>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p>	<p>제2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u></p>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양성평등 및 도시공간정책에 경
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람

<신 설>

<신 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주민복지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
정책과 도시공간정책 등 여성친화
도시 추진을 위한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
원 2명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경험이 풍
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
분야 전문가

5. 유니버설 디자인 등 도시공간정
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람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제30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여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5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
- 2.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주민

제31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 제시, 참여
- 4. 그 밖에 성 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2조(활동 지원) 군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군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신 설>

등 기관, 단체, 개인 등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임기 등) ①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 2. 다른 지역으로 진출한 때
- 3. 품위손상 등으로 군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 설>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운영

<신 설>

제6장 보칙

<신 설>

제34조(홍보) 군수는 여성친화도시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적합한 학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군

<신 설>

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안이유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강화
- 민·관·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에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참여 강화 (안 제23조)
 - 당연직 9명 ⇨ 5명, 위촉직 6명 ⇨ 10명으로 변경
- 제5장 군민참여단 운영 사항 및 보칙 신설
 - 설치 및 구성, 기능, 활동지원, 임기, 홍보, 포상근거 신설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20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산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시각장애인소유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2항 중 “대체취득(제1항)을 “대체취득[제1항]으로, “이전등록하고”를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

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로,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조례를 정하는 읍”를 “조례로 정하는 읍”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로, “대하여는 대해”를 “대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 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산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p>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생략)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를 정하는 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 대체취득[제1항-----

 --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 포함한다)-----
로 -----”-----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0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

1.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생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제1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삭 제>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
 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2
 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
 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
 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
 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해 -----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개정으로 ‘장애등급’ 이 ‘장애정도’ 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 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명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등급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2조)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및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3조)
- 다.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불합리한 조문 수정(안 제1조)
 - 법률 및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21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군의 공유재산의 보존과”를 “예산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을 “법 제16조”로,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하기”를 “처분에 관한 자문을 하기”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중 “관리나”를 “관리 및”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

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환경
3. 이용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그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
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군 내에서 생산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
2. 군 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 가. 군에서 공동상표로 관리하는 제품
 - 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
 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군 내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
 품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
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제32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인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⑥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장제3절(제41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예산군의 공유 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예산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u> ----- ----- ----- -----.</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u>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u>법 제16조</u>----- ----- <u>처분에 관한 자문을 하기</u> ----- ----- -----.</p>
<p>제5조(심의회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u>」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p>	<p>제5조(심의회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u>관리나</u> 처분에 대한 사항이</p>	<p>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 <u>관리 및</u> -----</p>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

-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 3. 대부재산을 다시 대부하거나 권리처분 여부
-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5. 원상변경 여부
-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 2. 주위환경
- 3. 이용현황
-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삭 제>
- <삭 제>
- <삭 제>

③·④ (생략)

제21조의2(사용·수익허가 시 수익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5항,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수가 인증하는 농·특산물
-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제품

<신 설>

<신 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사용·수익허가 시 수익계약 대상) ①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그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26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군 내에서 생산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

2. 군 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군에서 공동상표로 관리하는 제품

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군 내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30조(채광물의 채취료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채광물의 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시가 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

③ ~ ⑤ (생략)

제32조(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인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신 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생 략)
 ③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
 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
 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
 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
 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
 산처분신탁과 토지신탁(임대형 토
 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
 분한다)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사용료의 100
 분의 30 이내

⑥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
 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
 의 30 이내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 삭제
(안 제5조제2항제5호, 안 제38조제3항)
 - 조례개정 권고사항 및 미비점 보완에 따른 신설
(안 제21조의2, 안 제26조의2, 안 제32조)
 -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라 문구 수정
(안 제8조, 안 제30조제2항)
- 조례로 규정이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41조)
- 맞춤법 등 문구 수정(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6조)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22호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 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
-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신청 방법과 보조금 사용 범위 규정(안 제5조 ~ 제7조)
- 라. 보조금 실적보고 및 사후 관리 규정(안 제8조)
- 마. 관리감독 및 취소·환수 등(안 제7조)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23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수용자”를 “수도사용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수용가”를 “수도사용자 등”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8항 중 “수용가”를 각각 “수도사용자 등”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단”을 “다만”으로, “10퍼센트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퍼센트”를 “100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가구”를 “가구, 수도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100”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10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처분하게 한 사람”으로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건당 1만원

제45조제2항 중 “부정급수”를 “제1항에 따른 부정급수 신고”로,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상수도 누수 현장을 확인하고 누수공사 완료 후에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 사용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제29조 관련)

업종	사 용 구 분 (m ³ /월)	m ³ 당 요금(원)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가정용	1~20이하	720	800	840	
	21~30이하	1,050	1,160	1,230	
	31~40이하	1,240	1,370	1,460	
	41이상	1,420	1,570	1,660	
일반용	1~50이하	1,140	1,260	1,330	○ 1일 500m ³ 이상 제조업체 m ³ 당 970원 적용
	51~100이하	1,310	1,450	1,530	
	101~300이하	1,550	1,710	1,810	
	301이상	1,910	2,110	2,240	
대중 탕용	1~500이하	1,000	1,110	1,170	
	501~1,000이하	1,140	1,260	1,340	
	1,001~2,000이하	1,310	1,440	1,530	
	2,001이상	1,460	1,610	1,700	
전용 공업용	1~200이하	600	660	700	
	201이상	710	780	840	

※ 연도별 적용구분

2019년: 2019년 7월 부과분~2020년 6월 부과분

2020년: 2020년 7월 부과분~2021년 6월 부과분

2021년: 2021년 7월 부과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p> <p>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u>수용자가</u> 관리한다.</p>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수도사용자</u> ----- -----.</p>
<p>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생략)</p> <p>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수용가</u>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30조(업종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u>수도사용자 등으</u> ----- ----- -----.</p>
<p>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략)</p> <p>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 할 수 없을 때에는</p>	<p>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직전 3개월(정상 사용량)의 평균치를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평균사용량(이하 "평균사용량"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다만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건물안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비정상사용은 제외)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에 대하여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이때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인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 ⑦ (생략)

⑧ 수용가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누수사실을 검침원 등이 안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누수 수리를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누수 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도사용자 등-----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수도사용자 등-----

⑨ · ⑩ (생략)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로서 군수에게 신고한 자(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및 빗물이용 사용량의 일부나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 단, 상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4. 공동주택의 경우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 전체 사용료의 2퍼센트

5. 그 밖의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모범 음식점, 착한가격 지정업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구 등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 다만 -----
-- 100분의 10 -----

4. -----

----- 100분의 2

5. -----

----- 가구, 수도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5/100
-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100
- 3. (생략)

<신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9조 관련)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구분 (톤/월)	톤당 단가 (원)	
1.가정용	1~20이하	630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
----- 사람-----

-----.

- 1. -----
----- 100분의 5
- 2. -----
처분하게 한 사람: -----100
분의 10
- 3. (현행과 같음)

4.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건당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정급수 신고-----

----- 지급하
며,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상수도 누수 현장을 확인하고 누수공사 완료 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9조 관련)

업종	사 용 구 분 (m ³ /월)	m ³ 당 요금(원)			비 고
		2019 년	2020 년	2021 년	
가정용	1~20이하	720	800	840	

	21 ~ 30이하 21 ~ 40이하 41이상	920 1,090 1,240	
2.일반용	1 ~ 50이하 51 ~ 100이하 101 ~ 300이하 301이상	1,000 1,150 1,360 1,680	○ 1 일 5 0 0 톤 이상 제조 업체 톤당 970원 적용
3.대중탕용	1 ~ 500이하 501 ~ 1,000이하 1,001 ~ 2,000이하 2,001이상	880 1,000 1,140 1,280	
4.전용공업용	1 ~ 200이하 201이상	520 620	

	21 ~ 30이하 21 ~ 40이하 41이상	1,050 1,240 1,420	1,160 1,370 1,570	1,230 1,460 1,660	
일반용	1 ~ 50이하 51 ~ 100이하 101 ~ 300이하 301이상	1,140 1,310 1,550 1,910	1,260 1,450 1,710 2,110	1,330 1,530 1,810 2,240	○ 1일 500m ³ 이상 제조업체 m ³ 당 970원 적용
대중 탕용	1 ~ 500이하 501 ~ 1,000이하 1,001 ~ 2,000이하 2,001이상	1,000 1,140 1,310 1,460	1,110 1,260 1,440 1,610	1,170 1,340 1,530 1,700	
전용 공업용	1 ~ 200이하 201이상	600 710	660 780	700 840	

※ 연도별 적용구분

2019년: 2019년 7월 부과분~2020년 6월 부과분

2020년: 2020년 7월 부과분~2021년 6월 부과분

2021년: 2021년 7월 부과분~

1. 제안이유

-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형식 및 용어 등 미비점 보완
- 2019년 신규 시책과 관련하여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등록 수도 사용자에게 대한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상수도 요금 징수율 제고
- 2019년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과 관련하여 예산사랑 상품권(1만원)을 지급하여 생산비용 절감 및 우수율 향상 기대
-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8.6%로 낮아 일반회계 의존이 심화되고 2004년 이후 15년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요금을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형식 및 용어 등 미비점 보완
(안 제7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41조제1항제3호, 제45조제1항, 제45조제2항)
- 나.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41조)
⇒ 수도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추가
- 다. 지방상수도 누수에 대해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기준 추가(안 제45조)
- 라.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45조)
⇒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마.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 일부 변경
(안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24호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주거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시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에서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설 유형별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시설 유형별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시설 유형별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시설 유형별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시설 유형별	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주거 시설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 된 주거의 형태를 갖 추지 아니한 것	주거 시설	1. <u>단독주택</u>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u>다세대주택</u>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 된 주거의 형태를 갖 추지 아니한 것	숙박 시설 ~ 기타 시설	(생략)	숙박 시설 ~ 기타 시설	(현행과 같음)	숙박 시설 ~ 기타 시설	(생략)	숙박 시설 ~ 기타 시설	(현행과 같음)

1. 제안이유

-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중 주거시설 항목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명시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시설 분류 중 주거시설 항목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명시(안 제4조제1항 별표 2)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25호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m”를 “300미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군수”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인공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별지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경우

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하여 별표 1”을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으로, “ m^3 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해수 기타”를 “해수, 그 밖”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영 제24조제5항”을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 $10m^3/일$ ”을 각각 “10세제곱미터/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1m^3/일$ ”을 “1세제곱미터/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m^3/일$)”을 “(세제곱미터/일)”으로, “(원/ $m^3/일$)”을 “(원/세제곱미터/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원/ $m^3/일$)”을 “(원/세제곱미터/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
 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
 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요율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
 우”로,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불
 인”을 “15일(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로
 한다.

제26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사 용 요 율						하수 관거 사용 지역
	구분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원)				
			2019.7.1	2020.7.1	2021.7.1	2022.7.1	
가정용	1단계	1~20	120	160	210	260	50% 적용
	2단계	21~30	200	260	340	340	
	3단계	31~40	200	260	340	460	
	4단계	41이상	300	390	510	510	
일반용	1단계	1~50	230	300	390	400	
	2단계	51~100	340	440	530	530	
	3단계	101~300	340	440	570	600	
	4단계	301이상	390	510	660	660	
대중 탕용	1단계	1~500	120	160	210	270	
	2단계	501~1,000	150	200	260	340	
	3단계	1,001~2,000	170	220	290	380	
	4단계	2,001이상	200	260	340	440	
전용 공업용		1m ³ 당	230	300	390	440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u>300m</u>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 ----- ----- ----- ----- - <u>300미터</u> -----.</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u> 2. <u>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u> 3. <u>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u> 	<p><u><삭 제></u></p>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공작물의

제4조(일시 사용신고) -----

-----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
 설 또는 인공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
 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 법 제
 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
 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
 는 별지 1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
 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
 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
 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
 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
 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
 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
 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
 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
 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단서 신설>

준공검사 등)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 -----

- 별지 제1호서식-----

② -----

----- 다

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

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

④ -----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
----- 세제곱미터당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따라 -----.

③ (생략)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하수도 사용자 중에서 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초·중·고)에 한하여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반용의 1단계 m³당 단가만 적용한다.

⑤·⑥ (생략)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 사용료 징수 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를 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1. (생략)
-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생략)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생략)

- 3. (생략)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 1. (현행과 같음)

-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해수, 그 밖-----

다.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⑤ (생략)

제16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汚水)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汚水)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汚水)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汚水)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汚水)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汚水)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

-----.

1. -----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

2. -----.

가. -----
----- 10세제곱미터/일 -----

나. -----
----- 10세제곱미터/일 -- 10세제곱미터/

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
상 오수(汚水)량 산정 예 : [별표
4]

3. (생략)

4. 오수(汚水)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군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
상 오수(汚水)발생량(m³/일)에 제4
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m³/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생략)

② ~ ④ (생략)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
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
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
과한다.

일-----

3. (현행과 같음)

4. ----- 1세제곱미터/일

----- 범위-----

-----.

5. -----

-----(세제곱미터/일)
-----(원/세제곱
미터/일)-----.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따라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생략)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생략)

③·④ (생략)

제24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

----- (원/세제
곱미터/일)-----.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따른 -----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
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연체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수도과장 및 읍·면장 등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생략)
4.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6. ~ 16. (생략)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번 납기요율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요율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② 제1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 15일(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

제26조(권한의 위임)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15. (현행 제6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 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사 용 요 율			하수관거 사용지역
	구분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 (원)	
가 정 용	1단계	1~20	90	50% 적용
	2단계	21~40	150	
	3단계	41이상	230	
일 반 용	1단계	1~100	180	
	2단계	101~300	260	
	3단계	301이상	300	
대 중 탕 용	1단계	1~500	90	
	2단계	501~1,000	115	
	3단계	1,001~2,000	130	
전용 공업용	4단계	2,001이상	150	
		1m ³ 당	18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 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사 용 요 율						하수관거 사용지역
	구분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원)				
			2019. 7.1	2020. 7.1	2021. 7.1	2022. 7.1	
가정용	1단계	1~20	120	160	210	260	50% 적용
	2단계	21~30	200	260	340	340	
	3단계	31~40	200	260	340	460	
	4단계	41이상	300	390	510	510	
일반용	1단계	1~50	230	300	390	400	
	2단계	51~100	340	440	530	530	
	3단계	101~300	340	440	570	600	
	4단계	301이상	390	510	660	660	
대중탕용	1단계	1~500	120	160	210	270	
	2단계	501~1,000	150	200	260	340	
	3단계	1,001~2,000	170	220	290	380	
	4단계	2,001이상	200	260	340	440	
전용공업용		1m ³ 당	230	300	390	44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1. 제안이유

- 1998년 8월 1일 하수도사용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예산군 재정 부담 경감 및 공공하수도 현실화율(18%)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며,
- 하수도사용료의 이원화(내포신도시를 제외한 우리군 지역과 내포신도시 구역의 사용료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 대두.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사용료 인상(안 제11조제2항[별표1])

- 내포신도시 하수도요금 수준으로 요금인상(2019~2022까지 단계적 인상추진)

나. 하수도사용료 등의 연체료(가산금)산정방식 개선(안 제25조)

- 일할계산 조항 신설로 연체금(가산금)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로 연체료를 산정부과 하는 현행 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하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

다. 하수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의무 조항 삭제(안 제3조)

라. 하수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점용허가 시설의 준공검사 의무 조항 삭제 (안 제6조 제1항)

마. 배수설비 준공 검사 결과의 통보 방식 신설(안 제9조제2항)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배수설비 준공 검사와 함께 제출할 경우 관련부서 협의로 신청인에게 통보와 같음함으로써 신청인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26호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사업)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3. 군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건강도시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5.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학교, 사업장, 노인정 등) 조성 및 운영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5.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조성의 사업 발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8. 사회·문화적 유산 보존 및 건강도시 전망과 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요정책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

산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예산군의원
2. 건강도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예산군 관련부서 국·과장
4. 그 밖에 건강 관련 기관·단체 또는 건강도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예산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과 관계부서의 의견청취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군민참여) ① 군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주민, 공직자 및 관련단체와 부서 등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연회비 납부) 군수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의무에 따라 연회비 및 WHO서태평양건강도시 연맹(AFHC)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 예산군을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하는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이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사업 및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나. 예산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정함(안 제5조)
-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6조)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하여야 함(안 제13조)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조례 제2527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으로, “기업체·기관·기타”를 “기업체·기관·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타”를 “다른”으로, “전입한 세대에”를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두 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 또는 세대를 합가한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기타 특별법에 의해”를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별표 2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인정하는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및 아기출산 기념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3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

지원내용	지 급 기 준	비고
출산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아이 : 2,000,000원 •둘째아이 : 1년에 2,000,000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이 : 1년에 2,000,000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이 : 1년에 2,000,000원씩 5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 1년에 5,000,000원씩 6년간 지급 	제3조제1항 제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p>※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의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예외지원(순군비100%)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 제외한 금액지원 	제3조제1항 제2호
출산축하 기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장려 인식확산을 위한 출산 후 물품지원(총 20만원) - 아기용품: 예산군 아기용품점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소고기, 미역 	제3조제1항 제9호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전입실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2매, 예산국밥시식권2매 •전입실비 :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 10,000원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제3조제1항 제3호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1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0,000원 •2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0,000원 •3년,4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0,000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제3조제1항 제4호
고등학생 수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입학금 포함) 실비지원 - 1인 연1,200,000원 이내 지급 (다른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제3조제1항 제5호
대학입학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셋째아이 이상 자녀 대학입학시 - 1인 1회 2,000,000원 지급(단 최초입학시만 지급) 	제3조제1항 제6호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기업체 임직원 또는 체류지변경 외국인 근로자 	제3조제1항 제7호

[별표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바구니 예외지원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예외지원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미혼부로부터의 출생,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 부나 모 중 1인의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 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 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직장이 표기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제출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모두 인정하되,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미숙아의 경우 임신확인서의 출생예정일로부터 이전 6개월 시점부터 부모가 모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p>제3조 제1항 제1호,</p> <p>제3조 제1항 제9호</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역 발전 기반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예산군으로 전입한 <u>자</u>에 대한 지원 등 예산군의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사람</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인구증가 시책추진 유공자와 단체”란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u>자와</u>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u>기업체·기관·기타</u> 법인격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사람과</u> ----- - <u>기업체·기관·그 밖에</u> ----- -----.</p>
<p>제3조(지급대상 및 내용)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p>	<p>제3조(지급대상 및 내용)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등)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3. 타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또는 예산시네마 입장권, 예산국밥 시식권과 주민세 등 전입실비.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타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 생활용품비

5. (생략)

6. 대학(교) 입학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부모가 모두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입학 축하금.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

사람은 -----.

3. 다른 -----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두 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 또는 세대를 합가한 사람에게 -----.

4. ----- 다른 -----

5. (현행과 같음)

6. -----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

호에 따른 대학(원격대학),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재학생은 1학기(18학점) 이상 이수 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대학의 1/2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7. (생략)

8.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나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서 군으로 전입한 기업체의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에게 생활용품비

9. 신생아 출생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에게 아기출산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0. · 11. (생략)

② (생략)

7. (현행과 같음)

8. -----

다른

9. -----

----- .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별표 2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0.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출산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아이 : 500,000원 ●둘째아이 : 1,000,000원 ●셋째아이 : 1년에 1,000,000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이 : 1년에 1,000,000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 1년에 1,000,000원씩 5년간 지급 	제3조 제1항 제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리사 비용	<p>※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 내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의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예외지원 (순군비 100%)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 제외한 금액지원 	제3조 제1항 제2호
출산 축하 기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장려 인식확산을 위한 출산 후 물품지원(총 20만원) - 아기용품: 예산군 아기용품점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소고기, 미역 	제3조 제1항 제9호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전입실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2매, 예산국밥시식권2매 ●전입실비 : 세대당 예산 사랑상품권 10,000원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제3조 제1항 제3호
전입대 학생 생활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1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0,000원 ●2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0,000원 ●3년,4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0,000원 <p>(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p>	제3조 제1항 제4호
고등학교 수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입학금 포함) 실비지원 - 1인 연1,200,000원 이내 지급 (타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제3조 제1항 제5호
대학입학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셋째아이 이상 자녀 대학입학시 - 1인 1회 2,000,000원 지급(단 최초 입학시만 지급) 	제3조 제1항 제6호
기업체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기업체 임직원 또는 체류지변경 외 	제3조 제1항

출산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아이 : 2,000,000원 ●둘째아이 : 1년에 2,000,000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이 : 1년에 2,000,000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이 : 1년에 2,000,000원씩 5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 1년에 5,000,000원씩 6년간 지급 	제3조 제1항 제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리사 비용	<p>※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의 10%를 제외한 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예외지원 (순군비 100%)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10% 제외한 금액지원 	제3조 제1항 제2호
출산 축하 기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장려 인식확산을 위한 출산 후 물품지원(총 20만원) - 아기용품: 예산군 아기용품점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소고기, 미역 	제3조 제1항 제9호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전입실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2매, 예산국밥시식권2매 ●전입실비 : 세대당 예산 사랑상품권 10,000원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제3조 제1항 제3호
전입대 학생 생활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1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0,000원 ●2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0,000원 ●3년,4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0,000원 <p>(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p>	제3조 제1항 제4호
고등학교 수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입학금 포함) 실비지원 - 1인 연1,200,000원 이내 지급 (다른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제3조 제1항 제5호
대학입학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셋째아이 이상 자녀 대학입학시 - 1인 1회 2,000,000원 지급(단 최초 입학시만 지급) 	제3조 제1항 제6호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기업체 임직원 또는 체류지변경 외 국인 근로자 	제3조 제1항 제7호

생활용품비	국인 근로자	제7호
-------	--------	-----

[별표 2]

출산장려금 예외지원 내용
(제3조제1항 관련)

예외지원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미혼부로부터의 출생,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 부나 모 중 1인의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 모 중 1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 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직장이 표기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제출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모두 인정하되,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미숙아의 경우 임신확인서의 출생예정일로부터 이전 6개월 시점부터 부모가 모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3조제1항제1호

품비		
----	--	--

[별표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바구니 예외지원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예외지원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미혼부로부터의 출생,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 부나 모 중 1인의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 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 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직장이 표기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제출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모두 인정하되,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미숙아의 경우 임신확인서의 출생예정일로부터 이전 6개월 시점부터 부모가 모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1. 제안이유

- 전입실비를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외에도 2명 이상이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까지 확대 지원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출산장려금과 출산기념품 지급대상의 차이로 인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우리 군의 지속적인 인구 및 출산율 감소로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증액하여 출산장려 도모 및 양육부담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만 지원되던 전입 실비 등을 2명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 또는 세대를 합가한 자에게도 확대 지원(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아기출산 기념품 지급대상 예외지원 기준 단서 신설
(안 제3조제1항제9호)

-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되며 별표 2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 출산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으로 출산장려 도모와 양육 부담 해소(안 제3조제1항)

제6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규칙 제1463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기타 요금감면)”을 “(그 밖의 요금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같은 호 중 “자(업소 또는 음식점)”를 “업소 또는 음식점”으로, “의한 수도사용요금의 30%”을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100분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0m³”를 “10세제곱미터”로,

“(단”을 “(다만”으로, “10m³”를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 수도사용요금의 100분의 1
(다만, 감면 금액은 매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제1항 중 “45조제2항”을 “45조”로, “자”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포상금 지급”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중인 자가”를 “수행 중인 사람이”로,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도수용가”를 “수도사용자”로, “자.”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u>조례</u> 제4조제1호에서”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u>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 -----.</p>
<p>제3조(급수공사 신청) ① <u>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u>(이하”<u>조례</u>”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u>의한</u> 급수공사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략) ②·③ (생략)</p>	<p>제3조(급수공사 신청) ① <u>조례</u> ----- ----- ----- <u>따른</u>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의2(<u>기타 요금감면</u>) <u>조례</u> 제4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u>의한</u>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식품위생법</u>」에 <u>의한</u>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u>자(업소 또는 음식점)</u> : 월 부과된 업종별 <u>요율표에 의한 수도사용요금의 30%</u> 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u>의한</u>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세대당) : 매월 3,000원(제2호에 <u>의한</u> 감면신청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u>의한</u></p>	<p>제22조의2(<u>그 밖의 요금감면</u>) ----- ----- <u>따른</u> ----- -----. 1. ----- <u>따른</u> ----- ----- <u>업소 또는 음식점</u> ----- ----- <u>따른 수도사용요금의 100분 30</u>----- ----- 2. ----- <u>따른</u> ----- ----- ----- <u>따른</u> ----- ----- <u>따른</u> -----</p>

다.)

3.·4. (생략)

5. 경로당의 상수도 사용요금 중 1 단계 10m³에 해당하는 경우 : 매월 6,300원(단, 요금이 1단계 10m³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신설>

제23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예산군 소속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자.

2. 수도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

다--

3.·4. (현행과 같음)

5. -----
-- 10세제급미터-----
-----(다만----- 10세제급미터

6. 상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 수도사용요금의 100분의 1(다만, 감면 금액은 매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포상금 지급 등) ① -----제45조-----

----- 사람
으로 -----.

② -----
-----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

1. -----

----- 수행 중인
사람이 -----
-----경우.

2. 수도사용자-----

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
한 누수를 신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각 호와
같다.

-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0만원 상당의 예산사랑 상품권
-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만
원 상당의 예산사랑 상품권

----- 경우

③ -----

-----.

1. ----- 사람

2. ----- 사람 ---

1. 제안이유

-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형식 및 용어 등 미비점 보완
- 2019년 신규 시책과 관련하여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등록 수도사용자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으로서 상수도 요금 징수율 제고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형식 및 용어 등 미비점 보완

(안 제2조, 제3조 1항, 제22조의2, 제23조)

나.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시 사용요금의 1% 감면(다만, 감면 금액은 매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조항 신설(안 제22조의2 제6항)

제5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규칙 제1464호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를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별지 5”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6”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별지 8”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9”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10”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300m/m”를 “300밀리미터”로, “3m”를 “3미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5/10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별지 11”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12”를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3/100”을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2가구”를 “두 가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미만”을 “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별지 13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후단 중 “별지 14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가산금과 납입 독촉)”을 “(연체금과 납입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산금 독촉장을 발부”를 “연체금 독촉장을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별지 15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천원”을 “1,000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50%를”을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같은 항 중 “별지 16”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17에 의하여”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중 “별지 18”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용 개시 등의 신고) ① 「예 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공공하수도사용 개시 등의 신고 는 별지 1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 고서는 별지 2에 따른다.</p> <p>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3 에 따르고, 모든 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汚水) 배출량의 차이가 30이상인 사용자 <p>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 고는 별지 4에 따른다.</p> <p>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 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개시 등 의 시기와 사용량을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p>	<p><삭 제></p>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汚水)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에 모든 증명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6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관계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시설과 공작물 설치를 완료하면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7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의 준공)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

제3조(일시 사용신고 신청) ①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 별지 제6호서식-----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의 준공) -----

하면 7일 이내에 별지 8의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 받아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9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조(공사 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10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경미한 공사)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2. (생략)

3. 안지름 300m/m 이하의 총길이 3m 미만의 배수 설비와 개조공사

4. 5. (생략)

② ~ ④ (생략)

제9조(공사비의 산출) ① (생략)

----- 별지 제8호서식 -----

-----.

제6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

----- 별지 제9호서식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공사 신청의 취하) ① -----

----- 별지 제10호서식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경미한 공사)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300밀리미터 ----- 3미터 -----

4.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비의 산출) ① (현행과 같

② 일반 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5/100

2. 3. (생략)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11의 배수설비 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공사의 수요와 공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하면 별지 12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2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음)

② -----

1. ----- 100분의 5

2. 3. (현행과 같음)

제11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

----- 별지 제11호서식-----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2호서식-----

제12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00분의 3-----

군수는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였을 때

2. ~ 8. (생략)

제16조(사용량의 조정) ① ~ ③ (생략)

④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단일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실상 거주)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은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1m³미만인 단수는 절상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①·② (생략)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13 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다른 사람 -----

2. ~ 8.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량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두 가구 -----

----- 1세제곱미터 미만 -----.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13호서식 -----

-----.

제20조(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

방법 등) 조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 1. (생략)
-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14 서식에 따른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노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그 날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조례 제25조에 따른 가산금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급수 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와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는 서면에 따른

방법 등) -----

-----.

- 1. (현행과 같음)
- 2. -----
-----.
----- 별지 제14호서식 -----

-----.

제21조(연체금과 납입 독촉) ① -----

----- 연체금 독촉장을 발급 -----
-----.

② -----
----- 발급 -----

다.

제22조(공공하수도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
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15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
면 조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
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
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공공하수
도사용료를 매월 1천원 감면할 수
있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간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
면할 수 있다.

⑤ 군부대는 조례 제23조제1항제5
호에 따라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
다.

제24조(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

-.

제22조(공공하수도사용료 등 감면) ①

----- 별
지 제15호서식-----
-----.

② -----
----- 사람으-----
-----.

③ -----
- 따른 -----
----- 1,000원을 -----
-----.

④ -----
따른 -----
----- 100분의 50을
-----.

⑤ -----
----- 연체금-----.

제24조(재결 및 통지) ① -----
----- 따라 -----

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16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또한 충당 경우에는 충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7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증표) 조례 제3조, 제15조, 제26조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18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 징수)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나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

② ----- 따라 -----
----- 별지 제 16호서식-----

----- 그 밖에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

제25조(증표) -----

----- 별지 제18호서식-----
-----.

제26조(위탁 징수) ① -----

----- 다른 -----
-----.

② (현행과 같음)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 및 내용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의무 조항 삭제(안 제2조)
- 나. 하수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점용허가 시설의 준공검사 의무 조항 삭제
(안 제4조, 제2항)
- 다.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형식 및 용어 등 미비점 보완

제5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9년 5월 24일

예산군 규칙 제1465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출산장려금은 신청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둘째아이 2회분, 셋째아이 2·3회분, 넷째아이 2회분부터 5회분까지, 다섯째아이 이상 2회분부터 6회분까지의 지급시기는 해당 연도 출생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아야 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출산장려금 지원) ① (생략)</p> <p>② 출산장려금은 신청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셋째 아이 2회, 3회분, 넷째아이 2회, 3회, 4회분, 다섯째아이 2회, 3회, 4회, 5회분 지급시기는 해당 연도 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p> <p>③ (생략)</p>	<p>제2조(출산장려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출산장려금은 신청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둘째 아이 2회분, 셋째아이 2·3회분, 넷째아이 2회분부터 5회분까지, 다섯째아이 이상 2회분부터 6회분까지의 지급시기는 해당 연도 출생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1. 제안이유

- 우리 군의 지속적인 인구 및 출산율 감소로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증액하여 출산장려 도모 및 양육부담을 해소하고자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안 제2조제2항)
 - 셋째아이 2회, 3회분, 넷째아이 2회, 3회, 4회분, 다섯째아이 2회, 3회, 4회, 5회분
 - ⇒ 둘째아이 2회분, 셋째아이 2회, 3회분, 넷째아이 2회, 3회, 4회, 5회분, 다섯째아이 이상 2회, 3회, 4회, 5회, 6회분